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주요내용

주요 질의 응답		
순	질문	답
1	근무시간 중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	금지
2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	금지
3	검직 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학생이 등장할 때 초상권 동의	필수
4	공공 계정에 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탑재할 때도 초상권 동의	필수
5	운영 중인 유튜브에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학생이 등장	삭제, 불투명처리
6	콘텐츠를 상당 기간 탑재하지 않고 계정을 유지하며 댓글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계속활동으로 간주
7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개인)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기획 등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검직허가
8	검직 허가 기간과 검직 연장은?	-최대 1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1. 지침의 목적 및 적용

가. 목적

-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교원의 다양한 활동이 초·중등 교육활동의 질 제고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나. 적용 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교원

다. 적용 범위

-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름

라. 적용 세부 기준

- 교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을 우선 적용

마. 적용 시점

- 2021. 12. 31.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교원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며 준수할 사항을 사전 고지
- **2022. 1. 1.부터 지침 시행·적용**

※ 동 지침 시행 전까지는 기 안내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적용

2.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의 정의

가. 정의(지침 적용 대상 활동)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플랫폼 예시)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나. 유의 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참고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영역]

콘텐츠 목적	인터넷 플랫폼	
	개인 계정	공공 계정
개인 취미 등 사적 목적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수업 외 직무 관련		업무 관련 활동
학교 수업용 (공개 범위 제한)		

3. 준수할 사항

- ▶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 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
- ▶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채널명으로 중도변경 금지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마. 동의 없이 타인(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바.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관련 질의·응답

Q1 근무시간 중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은 가능한가요?

A1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 등)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나 SNS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A2

할 수 없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예: 직·간접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Q3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학생이 등장할 때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3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사진을 촬영할 때는 **겸직 허가 여부와 무관히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두고,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보관해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4 공공 계정에 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탑재할 때도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4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공공 계정에 콘텐츠를 탑재하는 경우라도 학생이 등장하는 경우라면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5 운영 중인 유튜브에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출연 학생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화면 인물 불투명 처리** 등을 하여 **재탑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Q6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관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즉, 출연 학생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불투명 처리 등을 하여 **재탑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Q7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았고 관련 증빙 서류도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 등에 탑재한 영상도 '출연자 동의를 받았음' 자막 처리해야 하나요?

A7 동 지침 이전에 탑재한 영상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자막 처리를 하여 영상을 재탑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지나 영상 설명 게시판 등을 통해 일정 시점 이전의 영상은 출연자 및 보호자의 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은 것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검직허가

- ▶ 대부분의 일상적인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검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검직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직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검직허가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예) 유튜브 :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네이버 블로그 : 운영 기간 및 콘텐츠 수, 방문자 수 등 네이버 애드 포스트 운영 정책상 광고 매체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예) 아프리카 TV의 경우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가능

관련 질의·응답

Q8 “계속 활동을 하는 경우”라 할 때, 계속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8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계속성 판단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대상 활동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Q9

콘텐츠를 상당 기간 탑재하지 않고 계정을 유지하며 댓글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9

“계속 활동”의 의미는 콘텐츠 게시, 댓글 작성, 계정 유지 등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유지 관리하는 일체의 활동을 포괄하므로, 상당 기간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하지 아니하여도 계정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겸직 허가권자: 겸직허가 기관의 장

다. 겸직 허가기준

- 1) 겸직허가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3. 준수할 사항」

- 2) 겸직허가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 교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겸직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 허가 절차

- 1) (신청) 겸직허가 기관의 장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요시)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개인 미디어 채널의 관리자 화면 캡처 등 겸직허가 신청서와 겸직심사 체크리스트에 기술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콘텐츠 게시 전에 신청
- 교원 임용 전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교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2) (심사) 겸직허가 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 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검토

- 겸직허가 신청서·겸직심사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콘텐츠의 성격, 수익, 담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 및 심사
-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3) **(결과통보)** 겸직허가 기관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통보**

- 통보 시 허가 여부, 허가 기간 등 심사 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관련 질의·응답

Q10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개인)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기획 등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10

교원이 직접 인터넷 개인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개인) 미디어에 기획, 출연 등을 하고자 한다면, 겸직허가의 일반 원칙에 따라 ①영리 업무이거나 ②비영리 업무일지라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실태조사 및 관리상 유의사항

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매년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말 기준)에 **겸직 실태조사**를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도 포함**

- 1) 점검 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 3) 점검 결과 보고 : **매년 1월 겸직허가 실태조사**를 할 때,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실태조사 결과(점검 후 조치 사항 포함)를 <서식4>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제출(추후 안내)

나. 겸직허가 기관의 장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확인한 경우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 요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1)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2) **겸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 등을 통해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초상권 침해, 학생 정보 노출, 직무 전념 저해 등 동 지침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다.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겸직허가 기관의 장에게 신청

서식1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검직허가 신청서 (예시)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검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학교명			
	직 급		성 명	
담당 직무	○ ○			
검 직 신 청 내 용	검직 허가기간	(예시 : 연도 중 검직 신청) 2021. 신청일 ~ 2021. 12. 31. (예시 : 1년 기준) 2021. 4. 1. ~ 2022. 3. 31.		
	채널명			
	채널 URL			
	활동 구분 (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수업 외 직무활동 <input type="checkbox"/> 개인 취미 등 사적 목적 활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활동 목적			
	주요 활동 내용	○ ○ ○ ○		
	초상권 활용 동의 필요 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필요하지 않음	구독자 수 (신청일 기준)	(단위 : 명)
게시물 수 (신청일 기준)	(단위 : 개)	월평균 광고수익 (신청일 기준)	(단위 : 만원)	
참고 사항	「초상권 활용 동의 필요 여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영상·사진에 등장하는지 여부로 판단 (등장하는 경우 동의 필요)			

- <필수 첨부> 1.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검직심사 체크리스트
2.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초상권 활용 동의가 필요한 경우)

2000. 00. 00.

신청자 000 (서명)

0 0 0 0 0 귀하 (검직허가기관장)

※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2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예시)

- 영상·사진 촬영 목적 :
- 영상·사진 탑재 인터넷 플랫폼 :
- 영상·사진 제작자(소속/직급/성명) :
- 촬영 일시 :
- 촬영 장소 :
- 촬영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 촬영물 사용 기한: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동의 여부(✓)
 - 해당 영상·사진을 위 플랫폼에서 제작자가 촬영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

20○○. ○○. ○○.

학생(보호자, 교사) ○ ○ ○ (인)

보호자 ○ ○ ○ (인)

○ ○ ○ ○ ○ 귀하(겸직허가기관장)

※ 동의자가 학생인 경우엔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함

※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1. 검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검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 유튜브 :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예	아니오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 아프리카 TV의 경우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가능	예	아니오

2.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의 준수사항 검토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예	아니오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알게 된 비밀적인 업무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예	아니오
-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등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활동은 금지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 운동은 금지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예	아니오
- 특정 정당 지지·반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등 정치적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있는지?		
- 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됨	예	아니오

○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 해당 콘텐츠에만 포함된 내용이 학생 평가에 반영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됨	예	아니오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콘텐츠의 제작, 채널 운영·관리 등 개인 미디어 활동에 소요 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예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콘텐츠 제작 등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지?	예	아니오
- 개인 미디어를 통해 얻는 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예	아니오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	아니오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으로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예: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 인·허가 등에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도·감독 등)로 판단	예	아니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예	아니오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예	아니오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예) 가짜뉴스 생성·전파, 욕설 사용 등	예	아니오

서식4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식

00년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실태조사 결과(엑셀 파일로 제출)

연번	시도	설립	학교급	직급	성명 (익명)	미디어 종류	미디어 제목	미디어 주소	겸직 허가 기간	구독자 수	게시물 수	주요 활동 내용	수익 (최근 3개월 평균, 원)	지침 위반 여부	조치 사항
예시		공립	초등	교사	김OO	유튜브	즐거운 음악교실	http://	'21.6.1. ~'22.5.31.	1,500	30	고전 음악가 및 클래식 소개 등	100,000	부적 절한 언행	겸직 허가 취소
		공립	중등	교감	이**	블로그	교원치유교 실	http://	'21.3.1. ~'21.12.31.	20,000	500	교직 에세이	5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①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및 점검 실시(겸직허가를 요하지 않는 활동은 제외)
- ②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
- ③ 지침 위반 여부는 간략하게 위반한 내용 기재
- ④ 조치사항은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기재